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번	안 호	15342
--------	--------	-------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나,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의3 신설).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3(양성평등센터의 설치 · 운영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의 설치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46조의3(양성평등센터의 설치</u></p> <p><u>· 운영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</u></p> <p><u>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</u></p> <p><u>산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를</u></p> <p><u>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센터</u></p> <p><u>의 설치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</u></p> <p>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